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11호: 2024년 4월

Contents

- 3** 세법 업데이트
연간 주요 개정세법 시행령
- 9** 인사 & 급여 업데이트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방식 및 비과세 한도
- 12** 회계감사 업데이트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는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감사 및 세무, 기타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세법 업데이트 연간 주요 개정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23일 세법 시행령의 후속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일부 수정을 거쳐 2024년 2월 29일 최종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세법 업데이트

소득세법 시행령

임직원 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소득령 §216의5 신설)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를 위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 등이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 및 주식 기준 보상¹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 내역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국외 지배 주주의 범위와 주식 기준 보상의 개념은 시행령에 위임되었습니다.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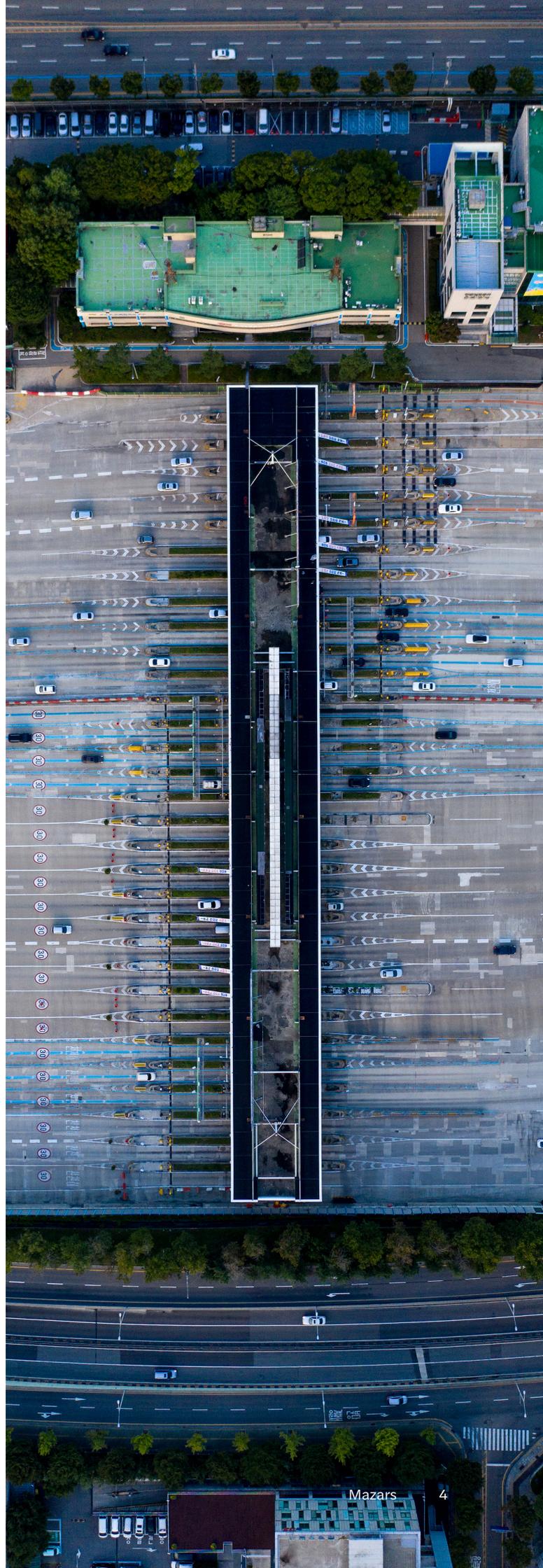
- 내국법인 임원 등인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²
-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임원 등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³

주식 기준 보상 정의

- 주식이나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사전에 작성된 주식 기준 보상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

2024년 1월 1일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주식이나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① (1)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② (1), (2)



세법 업데이트

법인세법 시행령

1.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19)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현지 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요건: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법인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해외 현지 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 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령 §50의2)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전용 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전용 보험 가입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업데이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2.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2) 아·자 신설)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합니다.

인적 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종전	개정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선 변호인의 국선 변호 등 학술 연구 용역과 기술 연구 용역 직업 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장애인 보조건 훈련 용역 외국 차관 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선 변호인의 국선 변호 등 학술 연구 용역과 기술 연구 용역 직업 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장애인 보조건 훈련 용역 외국 차관 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근로자 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업데이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요건 보완 (조특령 §16, §16의2, §16의3)

조세 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외국인 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의 특수관계 판단 시점이 과세 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 기간 중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종전	개정
<p>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법 §18) 2)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과세 특례 (법 §18의2) 3)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법 §18의3) <p>특례 적용 배제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 연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p>*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 관계 또는 경영 지배 관계</p>	<p>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법 §18) 5)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과세 특례 (법 §18의2) 6)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법 §18의3) <p>특례 적용 배제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p>*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 관계 또는 경영 지배 관계</p>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 적용 (조특령 §16의2)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사택 제공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개정
구체적인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신설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업데이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 대상 여부를 명확화 하기 위해,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를 합리화 합니다.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종전	개정
퇴직소득, 퇴직급여 총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인사 & 급여 업데이트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방식 및 비과세 한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방식, 비과세 한도 등 급여 관련 여러 사항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급여 업데이트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방식 및 비과세 한도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방식 변경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가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출산, 육아(6세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6세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아래와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증액 (2024년 소득 분부터 적용)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6세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아래와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일반	월 100만원	월 100만원
외항선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인사 업데이트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종전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2024년부터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예: 강연료, 자문료 등)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한시적으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중 지급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존에는 월의 중간에 아래와 같은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했으나, 2024년부터는 월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되, 매월 1일에 변동될 경우는 해당 월부터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된 경우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회계감사 업데이트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한국회계기준원은 2023년도에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해 총 7개의 기준서에 대해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2023년 12월 13일에 개정된 기준서를 공표하였습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1. 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001호) 중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주요내용

개정사항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와 관련 공시 및 그 부채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을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단 72B 신설)
- 문단72B의 조건이 되는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러한 부채가 12개월 이내 결제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문단 76ZA(2) 신설)
- 문단72B의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부채에 대해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단 76ZA(1) 신설)

개정이유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차입약정 등과 같은 특정조건에 영향을 받을 때 부채의 유동성 분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합니다.

2. 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001호) 중 “가상자산”

개정사항

가상자산 보유자, 개발자, 사업자별 공시 요구사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문단 한138.6 신설)

- 보유자
 - 일반정보(명칭, 특성, 수량), 회계정책
 - 가상자산별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개발자(발행)
 - 발행관련 일반정보, 회계정책
 - 매각의 주요내용, 매각관련 의무 및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 매각 관련 수익인식 시기 및 금액

- 사업자(고객대신 보유)

- 계약내용, 회계정책
- 공정가치
- 보관에 따른 위험
-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외부에 위탁한 경우 그 정보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 부재로 기인한 기업, 감사인간 이견을 해소하고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합니다.

3. 리스 (K-IFRS 제1116호)

개정사항

판매후리스의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리스 후속 측정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문단 102A 신설)

개정이유

현행 리스 기준에 판매후리스 거래의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후속 측정에 대해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합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4. 법인세 (K-IFRS 제1012호)

개정사항: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문단 4A, 88A)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질적 및 양적 정보의 추가공시가 요구됩니다.

- 필라2 법률 제정 전부터 효력발생 이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적 및 양적 정보
- 필라2 법률 효력 발행 이후: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의 별도공시

개정이유:

필라2 모범규칙 시행으로 발생하는 필라2 법인세 회계처리의 방법 및 공시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 필라2 모범규칙: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하였으며,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의 15%(최저한세) 이상 납부하도록 합니다.

시행일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4A, 88A)은 2023년 공표 즉시 시행하며, IAS 8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 추가 공시 규정(문단 88B ~ BBD)은 2023년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5. 현금흐름표 (K-IFRS 1007호) 및 금융상품:공시 (K-IFRS 1107호)

개정사항: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에 공급자금융약정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 (K-IFRS 제 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4F ~ 44H 신설) 및 공급자금융약정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공시해야 합니다. (K-IFRS 1107호 금융상품:공시, 문단 B11F 및 IG18A 신설)

개정이유: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4A ~ 44B) 및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도록 규정 (K-IFRS 제 1107호 금융상품:공시, 문단 B11F)하고 있으나,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 공급자금융 : 산업설비 · 선박과 항공기와 같이 수출금액이 거대하고 장기인 대형 자본재에 대해 수출국 금융기관이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금융형태 의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합니다.

6.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I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개정사항: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단 2.22의2 및 2.22의3 신설)

개정이유: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약정 준수시점의 고려하여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합니다.

7. 법인세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개정사항: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은 공시해야 합니다. (문단 22.62 신설)

개정이유:

K-IFRS와 마찬가지로 필라2 모범규칙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의 방법 및 공시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22.2의3)과 적용 사실 공시(문단 22.62(1))는 2023년 공표 즉시 시행하고 소급 적용합니다.

핵심 지표

주요 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
10억원 초과	49.5%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9%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3.1%
3000억원 초과	26.4%

*지방소득세 포함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4.0%	4.0%
국민연금	4.5%	4.5%
고용보험	0.9% + (0.25%~0.85%)	0.9%
산재보험	0.7% ~ 18.6%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35% ~ 28.85%	월 평균보수의 약 9.4%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률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ontacts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

Seung-ha Park, 박승하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jung-min.lee@mazars.kr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gyu-taek.sim@mazars.kr

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50,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십 33,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7,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www.mazars.com

© Mazars 2024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심규택, 정상안, 이기수, 박동원,
김양규, 김은유, 정한움